

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1026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8. 선고 2021가소4027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1. 원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7.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3426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9. '원고는 피고에게 164,0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80,000,000원 + 부가가치세 18,000,000원 - 기지급 공사비 55,0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원 +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20다2596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1. 12. 상고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6.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대 50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 10. 22. 18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닐뿐더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포함된 위 19,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을 포함한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이명선, 판사 이나경